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거창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페이지
2022-9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인구교육과)	1
2022-9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재무과)	7
2022-94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문화관광과)	15
2022-95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행복나눔과)	21
2022-9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경제교통과)	33
2022-97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교통과)	43
2022-98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산림과)	49
2022-99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 요구안 (보건정책과)	63
2022-100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체육시설사업소)	73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

의안
번호

2022 - 92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대상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사업비 : 665,000천원
 - 2022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군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2년	665,000	665,000	665,000	-	-	665,000	-

○ 사업내용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나. 부서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 거창군의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 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3. 관련법규 및 조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 계 법령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국 인구교육과) (시행일 : 2021.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삭제<2021.11.24.>

제4조~제6조 삭제<2019.4.3.>

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2021.11.24.)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 제10조 삭제<2021.11.24.>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2021.11.24.>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도·감도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1.11.24.)

제14조(출연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임원의 교체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조신설 2021.11.24.)

부칙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부칙(조례 제2496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682호 일부개정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근거	법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5-940-8812 홈페이지 : www.gcdream.kr			
	- 설립연도 : 2005. 12. 16. -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 2009년						
직원현황 ('22. 9. 현원기준)	계		기관형태 (출자, 출연)	비정규직			
	0명		0명	0명			
임원 ('22. 9.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구○○	거창군수	재직기간(당연직)			
	상임이사	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창군협의회장	2년(21.12.26. ~ 23.12.25.)			
	이사	이○○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재직기간(당연직)			
	이사	조○○	거창군산림조합장	2년(20.12.24. ~ 22.12.23.)			
	이사	이○○	前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장	2년(21.12.26. ~ 23.12.25.)			
	이사	이○○	前 거창교육지원청 과장	"			
	이사	구○○	前 (사)한농연 거창군연합회장	"			
	이사	이○○	한국예총 거창지회장	2년(20.12.24. ~ 22.12.23.)			
	이사	최○○	거창군새마을회장	"			
	이사	백○○	거창한뉴스 대표	"			
	이사	정○○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2년(21.12.26. ~ 23.12.25.)			
	이사	염○○	(합)기산건설 대표	"			
	이사	마○○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이사	강○○	거창빼재오미자 대표	"			
	이사	이○○	(사)거창시장번영회장	"			
	감사	이○○	거창군학원연합회장	"			
	감사	정○○	대경회계사무소	"			
주요기능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						
자본금 (단위:백만원)	10,973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65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 12. 31.기준	자산	11,031 (자산 총액)
	예산액	1,464	1,562	1,683		부채	58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735	725	725		자본	10,97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45			1,031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의안
번호

2022 - 93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2023년도 거창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나. 출연금 요구액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4,172천원

- 2023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군 특	도 비	군 비	기타
2022년	4,114천원	4,172천원	4,172천원	0	0	4,172천원	

* 산출기초 : '21년 결산 보통세 34,770,183천원 × 1.2 / 10,000

다. 부서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3. 관련법규 및 조례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내지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4. 참고사항

- 출연기관 현황
-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등)

관 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 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기관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02-2071-2789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인원현황 (2022년 8월 현원기준)	계 85명			정규직 69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위원22, 연구원17, 조사분석직6, 전문직3, 사무직18, 시설직1) 임시직·파견 16명 (위촉연구원5, 파견공무원9, 청사관리원2)
임원 (2022년 8월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임원 (2022년 8월 기준)	이사장		백재현	주요경력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 ~ 2023.12.21.
	부이사장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연직
	이사		진명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연직
	이사		김선조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안승대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김기홍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황명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2022.02.28. ~ 2023.02.27.
	이사		김재욱	경상북도 칠곡군수 2022.02.28. ~ 2023.02.27.
	이사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21.02.28. ~ 2023.02.27.
	감사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2022.02.28. ~ 2023.02.27.	당연직
	감사	김능식	오산시 부시장 2022.02.28. ~ 2024.02.27.	
주요기능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설립이후 2021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88,151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예산액	10,855	11,928	14,200
	지자체 지원액	8,972	10,821	11,16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12,364			당기순이익 11,093 1,282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20,999 (자산 총액)	
		부채	1,147 (부채 총액)	
		자본	19,853 (자본금 총액)	

참고 3

예산편성 협조 공문

인쇄 : 방종현 / 제무과 (2022-09-20 11:03:31)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상남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833호(2022. 9. 16.)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별 출연금 확정내역을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2023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집계표 1부. 끝.

경상남도 지방세
기금위원회

수신자 시군 세정부서

주무관

정태우

세정담당

강병문

세정과장

전결 2022. 9. 16.
심상철

협조자

시행 세정과-11781

(2022. 9. 16.)

접수 재무과-23507

(2022. 9. 16.)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종암대로 300, 세정과 (사립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3717 팩스번호 055-211-3719 / boy1466@korea.kr / 부분공개(5)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2023. 5. 4. ~ 6. 3.)

문서 관리카드 제무과-23507 1/1

2023년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 집계표

(단위 : 천원)

자치단체명	① '21년 결산 지방세	21년 결산 보통세			'23년 출연금		
		②소계(③+④)	③현년도⑤	④과년도⑥	⑥'22년 정산액	⑦'23년 출연분 (⑤*1.2/10000)	⑧'23년 출연금 (⑦=⑥+⑤)
경상남도	전국합계	110,273,769,295	103,195,082,268	102,950,282,105	244,800,162	0	12,383,405
	경남도 소계	6,043,118,622	5,536,153,501	5,518,670,090	17,483,411	0	664,337
	경남도 본청	3,484,185,282	3,007,882,817	3,026,092,874	-18,210,057	0	360,946
	창원시	821,117,731	790,458,736	780,527,418	9,931,318	0	94,855
	진주시	255,408,161	255,408,161	251,001,497	4,406,664	0	30,649
	통영시	67,270,838	67,270,838	65,526,636	1,744,202	0	8,072
	사천시	94,388,001	94,388,001	93,065,058	1,317,943	0	11,326
	김해시	390,255,939	390,255,939	383,317,970	6,937,969	0	46,831
	밀양시	98,827,346	98,827,346	97,706,776	1,120,570	0	11,859
	거제시	149,903,442	149,903,442	149,543,676	359,766	0	17,988
	양산시	318,280,798	318,277,137	313,145,016	5,132,121	0	38,193
	의령군	24,903,190	24,903,190	24,632,107	271,083	0	2,988
	함안군	73,309,664	73,309,664	72,258,431	1,051,233	0	8,797
	청녕군	48,249,116	48,249,116	47,672,790	576,326	0	5,790
	고성군	42,016,310	42,016,310	40,989,570	1,026,740	0	5,042
	남해군	24,343,295	24,343,295	24,196,691	146,604	0	2,921
	하동군	27,834,060	27,834,060	27,457,104	376,956	0	3,340
	산청군	29,361,988	29,361,988	29,033,777	328,211	0	3,523
	함양군	29,093,318	29,093,318	28,725,201	368,117	0	3,491
	거창군	34,770,183	34,770,183	34,171,515	598,668	0	4,172
	합천군	29,604,960	29,604,960	29,605,983	-1,023	0	3,552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

의안 번호	2022 - 9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대상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사업비 : 665,000,000원
 - 2022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군 특	도비	군비	기타
2022년	665,000	665,000	665,000	-	-	665,000	-

- 사업내용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나. 부서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 거창군의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 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3. 관련법규 및 조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 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시행일 : 2016.11.23.)

제4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전화번호 : 055-940-8460
				홈페이지 : www.gccf.or.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2017. 1. 4.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2.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2명		15명(파견7 포함)
임원 (‘22. 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18. 07. 01. ~
	상임이사		공석	
	비상임이사	조○○	문화관광과장	‘21. 03. 08. ~
		하○○	경남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21. 02. 18. ~ ‘23. 02. 17.
		안○○	사)아림예술제위원회 위원장	‘21. 02. 18. ~ ‘23. 02. 17.
		이○○	한국예총거창지회 회장	‘21. 02. 18. ~ ‘23. 02. 17.
		하○○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21. 02. 18. ~ ‘23. 02. 17.
		신○○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심사위원	‘21. 02. 18. ~ ‘23. 02. 17.
		이○○	사)한국서각협회 이사	‘21. 02. 18. ~ ‘23. 02. 17.
		권○○	거창미술협회사무국 지부장	‘21. 02. 18. ~ ‘23. 02. 17.
		김○○	주)거창중앙신문 대표	‘21. 02. 18. ~ ‘23. 02. 17.
		김○○	거창문화원 이사	‘21. 02. 18. ~ ‘23. 02. 17.
	감사	김○○	前국제로타리3590지구 사무국장	‘21. 02. 18. ~ ‘23. 02. 17.
		유○○	거창예술강사협의회 회장	‘21. 02. 18. ~ ‘23. 02. 17.
	감사	정○○	대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21. 02. 18. ~ ‘23. 02. 17.
		윤○○	재무과장	‘22. 07. 14. ~
주요기능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지역문화예술단체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 기획, 운영 ·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 · 문화예술관련 국가, 경상남도, 거창군의 위탁, 대행, 보조사업 · 그 밖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5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 · 출연액 (단위:백만원)		976백만원('22.)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 12. 31.기준	자산	1,086 (자산 총액)	
	예산액 ²⁾	2,656	2,938	3,937		부채	825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2,342	2,624	3,620		자본 ¹⁾	261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197			2,069		93.9		

참 고 사 항

1 문화재단 운영지원 사업 [인건비,경상경비-출연금]

- 사업목적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한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장소 : 거창문화재단 일원(거창문화센터)
- 사업비 및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2023년 예산액	2022년 편성액	증감	증감사유
합계		1,154,610	976,000	178,610	
인건비	소 계	519,435	428,995	90,440	
	단장, 단원	328,185	294,068	34,117	근로기준법에 따른 반영
	기간제근로자	191,250	134,927	56,323	불가상승(최저인건비) 반영
경상경비	소 계	635,175	547,005	88,170	
	복리후생비	51,880	44,800	7,080	
	일반운영비	177,120	208,330	△31,210	창고임차, 이사비, 당직비 등 감액
	공공요금및제세	157,632	139,332	18,300	전기사용료, 공공요금 증액
	시설유지관리비	78,000	90,000	△12,000	홈페이지, 3종시설물검사 반영
	회의운영비	13,543	13,543		
	여비교통비	30,000	36,000	△6,000	국내여비 감액
	업무추진비	12,000	12,000		
	관서업무비	3,000	3,000		
	자산취득비	112,000		112,000	관용차, 공연장 장비 구매 증액

※ 거창문화재단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分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지원금액	906,300	691,000	843,000	976,000	1,154,610
전년대비증감	증) 362,170	감) 215,300	증) 152,000	증) 133,000	증) 178,610
예산과목	법정운영비	출연금(306-01)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	2022 - 95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거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거창군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2022.12.31.) 도래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재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사무	비고
거창군 가족센터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170	214.61 m^2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 거창군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센터운영 능력 등을 고려
 - 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

다. 그간 운영 상황

- 수탁기관 : 거창기독청년회(거창YMCA)
- 위탁기간 : 2019. 1. 1. ~ 2022. 12. 31.(3년간)

3. 동의(승인)사항 :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 관련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
- 「거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 동의(승인)내용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단체에게 공개모집(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통한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

4.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법인 선정 공고 및 접수 : 2022년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2022년 12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 2022년 12월
- 위·수탁협약 체결 : 2022년 12월
- 위탁업무 개시 : 2023년 1월

붙임 1.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민간위탁 중인 거창군가족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위탁기관 공모를 통해 경영능력과 전문성 등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 「거창군가족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2022년 가족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지침

II 추진배경

- 거창군가족센터 수탁기간 만료 : 2022. 12. 31.

III 추진방향

- 위탁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는 공개 모집으로 투명성 확보
- 가족센터 포괄적 제공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능력 고려
- 선정기준의 합리적 수립과 절차의 객관성 강화로 최적의 위탁기관 선정
- 전문적인 심사위원 구성으로 심사수준 및 심사결과의 공신력 제고

IV 가족센터 현황

□ 위탁기관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비고
거창군가족센터	거창읍 강남로 1길 170 1층 (구 보건소)	214.61m ²	

□ 현 위탁체 현황

수탁기관	대표	시설장	주소	비고
거창기독교청년회 (거창YMCA)	정병문	조미금	거창읍 강변로 87	

※ 최초 운영 : 2008. 1. 31. / 거창기독청년회(거창YMCA) 위탁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2019년 예산 : 522,169천원
- 위탁사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시설관리 전반

V 세부추진 계획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간]

□ 위탁방법 : 공개모집[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위탁내용

- 위탁사무 : 거창군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위탁업무 : 건강가정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각 호의 업무와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위탁시설 : 거창군 가족센터 시설물(강남로1길 170, 214.61m²)

□ 추진절차



□ 세부추진일정 및 내용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11. 14.(월) ~ 2022. 11. 23.(목) / 10일간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게시
 - 접수기간 : 2022. 11. 15.(화) ~ 2022. 11. 24.(금) / 10일간
 - 접수장소 : 행복나눔과 여성보육담당
 -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 직접방문 접수 (우편, 택배 인터넷접수 불가)
- ※ 세부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
- 제출서류

- | |
|--|
| ① 거창군 가족센터 수탁신청서 |
| ② 신청자격 입증서류 각 1부 |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 [단체] 단체등록증 및 회칙(규약)사본 각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
| [학교] 등록증사본, 학교의 회칙 또는 규약, 인감증명서 |
| ③ 법인(단체)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서류 (별도서식) |
| ④ 대표자 및 센터장(내정자)의 자격 및 경력 증명 서류 |
| ⑤ 사업운영실적 (별도서식) |
| ⑥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예산·수입·지출계획서 포함 (별도서식) |
| ⑦ 서약서(별도서식) |
| ⑧ 개인정보이용 및 사전동의서 |
| ⑨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심사 및 선정 *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심사기간 : '22. 11. 28.(월) ~ '22. 12. 9.(금) / 12일간
- 심사방법 : 선정 심사 위원 구성·심사
 - ▶ 구성인원 : 7명이내(위원장 포함)
 - ▶ 위원구성 : 관련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지명
- 심사방법 : 서면 및 면접심사
 - ▶ 서면 : 선정기준에 따라 제출자료 심사
(면접심사 3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 사전 송부)
 - ▶ 면접 : 신청기관 대표자 참석(센터장 참석가능), 운영계획 설명
- 심사항목

항목(5개부분)	점수(100점)	심사내용(16개항목)
1. 법인 적격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 및 설립목적- 적격성
2. 재정능력 및 공신력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지역사회내 공신력 제고방안-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3. 사업운영·실적능력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대표의 이사회의 적합성- 운영실적, 전문성-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4. 운영계획의 적정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사업운영의 전문성, 재정확충방안의 타당성- 지역사회 자원원방안
5. 센터장 전문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장의 전문성과 운영의지

- 선정방법
 - ▶ 위원별 총점을 평균점수로 환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자로 결정
 - ▶ 동점의 경우 심사기준의 비중이 큰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기관
 - ▶ 단독 신청할 경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운영자로 결정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 재공고 경우 : 신규 위탁체 선정시까지 현재 운영법인의 계약 연장

결정·통보 및 위탁계약 체결

- 계약체결 : 2022. 12. 12. (월) ~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
- 계약방법 : 위탁운영 약정서에 따라 계약 체결
- 계약조건 :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 고용 유지

VI 행정사항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11. 14.(월) ~ 2022. 11. 24.(목)
- 심사계획 수립 및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22. 11. 28.(월)한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22. 12. 9.(금)한
-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2022. 12. 24.(목)한
- 위탁기관 선정결과 보고 : 2022. 12. 30.(금)한

-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관 계 법령(요약)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위치)

-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센터를 통합하여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강가정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② 센터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강남로1길 170에 둔다.

제3조(업무 및 시설)

- ① 센터는 건강가정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 ② 군수는 센터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

의안 번호	2022 - 96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희)
- 사업비 : 40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23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군 특	도 비	군 비	기타
2023년	300	400	400			400	

○ 사업내용

- 거창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컨설팅 지원

나. 부서의견

-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대비 1억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신용보증재단 출연 요청액은 5억원이나, 거창군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 변화, 경남도내 타 시·군 출연금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음

3. 관련법규 및 조례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4. 참고사항

- 경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지원 협조 공문

관 계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연기관 현황 】

경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화번호: 1644-2900 홈페이지: www.gnsinbo.or.kr
주요연혁	1996.06.05.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 2000.03.20. 경남신용보증재단 전환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2. 8. 31 현원기준)	계 121명		정규직 117명	비정규직 4명	
임원 ('22. 8.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0.11.1~' 22.10.31	
	비상임이사	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21.9.13~ (당연직)	
	〃	김**	경상남도 경제기업국장	'20.12.31~ (당연직)	
	〃	김**	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장	'21.6.1~' 23.5.31	
	〃	정**	NH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21.6.1~' 23.5.31	
	노동이사	김**	경남신용보증재단 부지점장	'21.3.3~' 23.3.2	
	감사	장**	장** 회계사무소대표	'20.9.1~ '22.8.31	
주요기능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282,513 (직전연도 말 기준)			출자 · 출연액 (단위:백만원)	122,856 (직전연도 말 기준)
최근 3년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자산 350,813 (자산 총액)
	예산액 ²⁾	56,740	71,137	88,155	예산액 ²⁾ 88,155
	지자체 지원액 ³⁾	4,123	7,550	9,450	지자체 지원액 ³⁾ 17,55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 기준	총수익 31,629			총비용 36,599	당기순이익 △4,970

“전국 최고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솔루션 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수신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경유)

제목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거창군)

1. 거창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코로나 19 사태 및 계속되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보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증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불임과 같이 출연을 요청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거창군 출연금 협조요청 1부. 끝.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22. 8. 16.

★◎부부장 진종빈

부장

김연경

본부장

이시장

구철희

협조자

시행 경영기획 2022-1468 (2022. 8. 16.) 접수 경제교통과-97418 (2022. 8. 16.)

우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4층(창원컨벤션센터) / <https://gnsinbo.or.kr/>

전화번호 055)715-5148 팩스번호 055)717-0030 / bjin@gnsinbo.or.kr / 대국민 공개



**2023년도
『거창군』 출연금 지원 요청**



2023년 거창군 출연금 [5억원] 지원 요청

지역에 소재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출연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대규모 보증 공급으로 향후 재단의 손실 누적이 예상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공급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거창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하여 출연금 **5억원**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검토 요청합니다.

I

출연의 필요성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경남	264,301	231,336	258,222	1,125,164	464,713	806,374	71.7
거창	4,434	4,004	4,371	14,283	7,720	12,454	87.2

* 출처 : 「2021 중소기업기본통계(2019년도 사업체 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 신용보증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신규보증 1억원 당	1.88억원	0.83억원	1.01명

* 출처 : 「2020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 보고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재단의 안정적인 운용배수 유지

- 코로나19 사태 및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보증 수요 증가와 '22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새출발기금 영향으로 향후 운용배수 급증예상

* 운용배수 현황 : ('19년) 7.41배→('20년) 9.9배→('21년) 8.38배→('22.7월말)
8.27배

○ 재단 손실 증가에 따른 기본재산 확보 필요

-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및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보증지원으로 향후 지속적 손실 증가 예상됨에 따라 기본재산 확충의 필요성

* 손실금 : ('18년)△127.5억원→('19년)△185.9억원→('20년)△162.5억원→('21년)△49.7억원

○ 대규모 보증공급 이후 부실 급증 사례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하여 「08~'09년 대규모 특례보증 공급이후 '12년까지 3년간」 대위변제율 지속적 증가한 사례

* 대위변제율(전국재단) : ('09년) 2.08%→('10년) 2.83%→('11년) 4.0%→(**'12년**) **4.49%**

→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특례보증 시행으로 향후 1~2년간 우리재단 대위변제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II

거창군 신용보증 · 대위변제 주요현황

○ 거창군 보증공급 현황 (기한연장 포함)

- 재단 설립('96.6) 이후 거창군 소재 기업에 지원된 누적 총보증 금액은 3,694백만원
- '22년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년대비('19, '21년) 보증지원 증가

* 보증공급액 : ('19년) 433백만원 → ('21년) 541백만원 → (**'22년 6월**) **139백만원**

('22.6.30.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 중소기업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6.6월~2018년	258	2,167	0	0	258	2,167
2019년	31	433	0	0	31	433
2020년	33	414	0	0	33	414
2021년	38	541	0	0	38	541
2022년 6월말	18	139	0	0	18	139
합 계	378	3,694	0	0	378	3,694

○ 거창군 대위변제 현황

- 재단 설립('96.6) 이후 거창군 소재 기업의 누적 대위변제순증 금액은 36억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증요건 완화 및 지역경기 침체로 향후 지속적 부실 증가 우려

('22.6.30.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 중소기업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6.6월~2018년	258	2,167	0	0	258	2,167
2019년	31	433	0	0	31	433
2020년	33	414	0	0	33	414
2021년	38	541	0	0	38	541
2022년 6월말	18	139	0	0	18	139
합 계	378	3,694	0	0	378	3,694

III 출연금 현황

○ 기초지자체 출연비중 저조

- 우리재단 출연금에 대한 비중을 볼 때 신용보증으로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영위하는 시·군의 출연금 비중은 12.1%로 저조한 설정

(기간 : '96.6 ~ '22.6.30, 단위 : 억원)

구 분	총 출 연 금					이월 손익금	계
	정부	경남도	시.군	금융기관	기업체 등		
금 액	614.7	922.9	450.2	1,601.0	119.7	△581.0	3,127.5
구성비	16.6%	24.9%	12.1%	43.2%	3.2%	-	100%

○ 전국 광역지자체 출연금 중 시·군 출연비중 하위수준

- 광역지자체 소속 타 재단과의 비교에서 우리재단 시군 출연금 비중은 평균(23.3%) 이하의 저조한 수준(12.1%)을 보이고 있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주체별 출연비중】

(기간 : '96.6 ~ '22.6.30, 단위 : 억원)

구분	총출연금	광역		시·군		기타	
		금액	%	금액	%	금액	%
경남	3,709	923	24.9%	450	12.1%	2,335	63.0%

【전국 광역지자체재단 출연주체별 출연비중】

(기간 : 설립일 ~ '22.6.30, 단위 : 억원)

구분	총출연금	광역		시·군		기타	
		금액	%	금액	%	금액	%
강원	2,737	1,234	45.1%	87	3.2%	1,416	51.7%
경기	17,048	4,006	23.5%	5,036	29.5%	8,006	47.0%
경북	3,820	606	15.9%	1,319	34.5%	1,895	49.6%
전남	2,610	778	29.8%	226	8.7%	1,606	61.5%
전북	2,764	847	30.6%	314	11.4%	1,603	58.0%
충남	3,480	654	18.8%	777	22.3%	2,049	58.9%
충북	1,989	349	17.5%	264	13.3%	1,376	69.2%
합계	34,448	8,474	24.6%	8,023	23.3%	20,286	58.9%

○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운영

- '23년 출연금은 설립이후 보증공급, 보증잔액 및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금의 합계와 시·군별 보증이용율을 고려하여 산출
- '23년도 재단 출연금의 12배 이내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를 운용하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
-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운영금액 : 5억원 * 12배 = 60억 이내

○ 출연금 산출

- 지역별 보증잔액 증가액의 법정비율 금액과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금 합계액의 50%(재보증 제외)에서 도 출연금액을 지역별로 안분 차감한 각 기초단체별 조정 출연금 산정
- 대출금리 상승기 이자지원이 되는(이차보전) 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확대 필요성과 시군별 보증이용율(총 사업체수 / 이용업체수 * 100)을 고려한 2023년 요청 출연금 산정

○ 거창군 출연산정 참조자료

(단위 : 백만원)

지역	보증잔액 증가액			대위변제 순증	출연 필요금액			안분차감		출연금 조정 출연금 (J)	2022.6.30. 기준 참고 자료							
	2020년 잔액 (A)	2021년 잔액 (B)	잔액 증감 (B-A) (C)		2021년 대위변제 (D)	잔액증가 법정비율 (G/15배) (E)	대위변제 (재보증제외) (Dx50%) (F)	소계 (E+F) (G)	경남도 출연 (H)	실제 산출 출연금 (G-H) (I)	시군별 보증이용율 (K)	시군별 보증이용율 과부족 (L)	총 사업체수 (M)	이용업체수 (N)	시군별 누적 출연금 (O)	보증잔액 (P)	대위변제 순증누계 (Q)	
합 계	2,316,403	2,366,903	50,500	32,088	3,367	16,044	19,411	3,000	16,411	16,550	16,850	44.65%	231,336	103,283	45,019	2,554,346	307,462	
거창군	49,456	49,618	162	541	11	271	281	43	238	250	500	49.70%	5.05%	4,004	1,990	1,400	52,342	3,694

※ 2023년 실제 산출 출연금(I)을 고려한 조정 출연금((J))은 165억원이나, 시·군 소상공인의 보증이용율 확대 및 금리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한 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가 필요하여 '22년 수준 출연 요청

- 1) 시·군별의 보증이용율(보증이용업체수 / 총 사업체수 *100) 평균은 44.65%이나 시·군간 보증이용율 편차를 고려하여 '22년 수준 이상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필요
- 2) 기준금리 인상 및 대출금리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필요
- 3) 경상남도 총 출연금은 77억원이나 47억원은 지정(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재원) 출연금으로, 시·군별 안분 차감은 지정 출연금을 제외한 30억원을 적용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9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요구내용

-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거창시장번영회에 재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명 :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나. 시설현황(거창전통시장 내)

- 공영주차장

위치	시설물	면적(m ²)	비고
거창읍 중앙리 154	1층 : 관리실, 화장실 1~2층 : 주차장 148면 공용 : 엘리베이터	3,261.35	

- 공중화장실(3개소)

위치	시설물	면적(m ²)	비고
거창읍 중앙리 122-8	1층 - 공중화장실	35	
거창읍 중앙리 143-5	1층 - 공중화장실	19	
거창읍 중앙리 113-12	1층 - 공중화장실	79.35	

다. 위탁대상 사무

-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 거창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

라. 기 위탁현황

- 위탁기관 : (사)거창시장번영회
- 위탁기간 : 2021. 1. 1. ~ 2022. 12. 31.

마. 운영계획

- 위탁기관 : (사)거창시장번영회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
- 위탁내용

구 분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비고
위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운영 및 수익금 관리· 주차장 관련 민원 접수 및 해결· 주차장 시설 수리·수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화장실 청소· 화장실 관련 민원 접수 및 해결· 화장실 수리·수선· 화장지 비누 등 비품 비치	
위탁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상 위탁※ 운영 수입금 전액 주차장 및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지원 : 33,628천원	

바. 소요예산 : 33,628천원(공중화장실 위탁비용지원)

※ 운영 수입없이 유지·관리비만 발생

사. 향후일정

- 시장번영회와 위·수탁 계약 체결 : 2022. 12.
-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 2023. 1.

3. 참고사항

가. 위탁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제2항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
-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제6조제1항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제1항

다.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 민 간 위 탁 운 영 계 획

거창전통시장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사)거창시장번영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I |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 위탁할 수 있다.
-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제2항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
-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제6조제1항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제1항

II | 운영현황

-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 위탁기간 : 2021. 1. 1. ~ 2022. 12. 31.
 - 수탁기관 : (사)거창시장번영회
 - 시 설

위 치	시 설 물	면적(m ²)	비고
거창읍 중앙리 154	1층 : 관리사무실, 화장실 1~2층 : 주차 148면 공용 : 엘리베이터	3,261.35	

- 거창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 위탁기간 : 2021. 1. 1. ~ 2022. 12. 31.
 - 수탁기관 : (사)거창시장번영회
 - 시 설

위 치	시 설 물	면적(m ²)	비고
거창읍 중앙리 122-8	1층 - 공중화장실	35	1호
거창읍 중앙리 143-5	1층 - 공중화장실	19	2호
거창읍 중앙리 113-12	1층 - 공중화장실	79.35	3호

III 위탁계획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
- 위탁방법 : 거창시장번영회와 수의계약
- 위탁내용

구 분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비 고
위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운영 및 수익금 관리• 주차장 관련 민원 접수 및 해결• 주차장 시설 수리 · 수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화장실 청소• 화장실 관련 민원 접수 및 해결• 화장실 수리 · 수선• 화장지 비누 등 비품 비치	
위탁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상 위탁※ 운영 수입금 전액 주차장 및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 관리비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지원 : 33,628천원※ 운영 수입 없이 유지 · 관리비만 발생	

- 선정기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IV 향후계획

- 군의회 위탁 동의 요구안 제출 : 2022. 10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2. 12월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거창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제2항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

제6조(공영주차장의 수탁자 자격)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

4.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5.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제1항

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전통시장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

의안 번호	2022 - 9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근거 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업비 : 24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3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타
2023년	260	240	240			240	

※ 2022년 출연금 260백만원(2022년 대비 20백만원 증액)

○ 사업내용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198백만원 (인건비 180백만원, 운영비 18백만원)
- 항공촬영 지적 분석용 프로그램 신규 구입 : 20백만원
-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야(토질 및 콘크리트 등) 확대를 위한 장비 구입 : 22백만원

나. 부서의견

- 거창 석재산업 발전의 중추기능을 맡고 있는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함

3. 관련법규 및 조례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1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2

관 계 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거창화강석연구센터 현황)

I

연구센터 일반현황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연구센터 현황

- 법인명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 거창군수)
- 법인허가(설립등기) : '07. 1. 31.(자본금 : 10백만원(거창군 출연))
- 임원현황 : 이사장 외 14명 (이사 10, 감사 2, 간사 1, 고문 1)
- 직원현황 : 총 5명(센터장 1, 연구직 2, 생산직 2)

성명	직책	담당업무	학위/자격
최태환	연구센터장	연구센터 업무 총괄 / 기업지원 / 협력네트워크	학사/'가'
정영일	선임연구원	시험기관 총괄 / 법인 운영 / 사업 관리 / 기술개발	석사/'나'
이승안	연구원	시험분석 품질 및 기술업무 지원 / 채석기술 지원	학사/'다'
조형철	생산/시험팀장	기능석재 공장운영 책임, 품질시험실무 등	학사/'다'
이진호	생산/시험주임	품질시험실무 및 보유 장비운영 등	학사/'라'

거창화강석 산업현황

□ 석재산업 현황

○ 채석 및 가공업체 현황

- ▶ 종사인구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음
(물류, 유류, 기계, 공구 등 지역경제에 재투자 비율이 높음)

(단위 : 개소 / 명 / 백만원)

구 분	계	석산협회	석재조합
업체수	34	12 (원석 11, 골재 1)	22 (회원 18, 비회원 4)
종사자수	174	101	73
매출액 (2021년)	53,590	30,682	22,908
농업조수익 (2021)	쌀(53,636), 사과(118,338), 딸기(34,720), 한우(142,485)		

* 비회원사(수가공), 유통업, 중간소매, 석시공 등은 매출액 제외

○ 석재 관급시장 연간 매출 규모(조달청)

- ▶ 관급시장규모 대비 거창지역 매출규모는 동일 수준을 유지 중임
(원석, 인건비, 유류비,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증가로 내부 수익성은 악화)

(단위 : 백만원)

관급시장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 국	338,487	384,960	374,732	371,758	380,103	415,008
거 창	40,652	38,200	44,364	38,971	38,390	40,137
거창매출규모	12%	10%	12%	10%	10%	9.7%

* 관급계약 매출액 기준으로 사급 및 기타 석제품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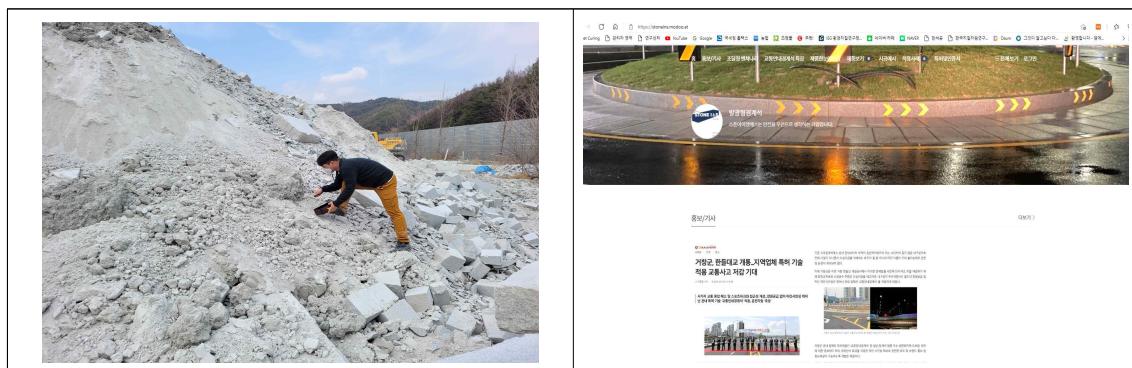
2022년도 성과목표 및 실적

구 분	'22년도 성과 목표	'22년도 실적 (9월말)
기업지원 (석산/가공)	기업애로사항 지원	20건
	기업샘플/시제품 제작	10건
	원산지 검증 지원	2건
	석재 시험분석 지원	600건
	채석/사면 평가 지원	4건
	석재 대외업무 지원	20건
	홍보 마케팅 지원	10건
학술연구용역	한라산 모니터링 외	4건
연구개발	기술개발 및 제품화	2건
경영수익	공인시험기관 운영	220,000천원
	채석/사면 평가 지원	105,6000천원
	학술연구/기타 수익금	53,000천원
	합 계	378,600천원
		216,690천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 석재관련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 ▶ 석재가공부산물 재활용 방안 및 유해성 분석 지원
- ▶ 라돈, 방사능 등 유해성 분석을 통한 거창화강석 품질우수성 확보
- ▶ 홈페이지 제작 요청에 따른 제작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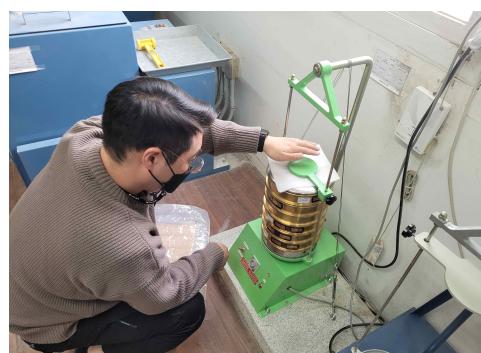
○ 석재관련 대외업무 지원 및 네트워크 활동

- ▶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따른 품질시험 지원
- ▶ 조달청 석재류 원산지 위반 합동점검 기술지원 등



○ 공공·민간부문 학술연구용역 수행

- ▶ 한국임업진흥원 ‘2022 석재 품질 분석’ 용역 수행
- ▶ 국토교통부 “2022 골재자원조사/골재 불소 발생평가” 용역 수행 등



○ 거창화강석 품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 ▶ 거창화강석 및 조달물품 대상 석재 유해성(라돈) 분석
- ▶ 거창화강석 및 조달물품 대상 석재 원산지 관리를 위한 대자율 측정



○ 거창화강석 홍보/마케팅 업무 지원

- ▶ 거창화강석 조형물 제작 관련 자문 및 홍보
- ▶ 지역기업 개발제품 구매를 위한 구매협조 요청 지원 등
-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구상반려암 전시품 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거창군 관내기업인 동민조형 매칭 지원
- 총 7개 작업(매출액 450만원 정도)



□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성과

○ 조경석 단체표준 규격 제정을 통한 거창기업 매출액 증대

- ▶ 2012년 조경석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용역 수주 및 단체표준 제정
- ▶ 2013년 조경석 조달다수공급자(MAS) 물품 등록

(단위 : 억)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업체수	3	3	5	7	8	9	11	10	9	11
매출액	38	37	25	92	86	87	94	88	109	139

○ 석재 원산지 검증활동 지원 효과

- ▶ 국내 유일의 석재 원산지 검증기관 → 거창화강석 사용 유도
- ▶ 원산지 검증에 따른 효과 : 거창화강석 보호 및 업체 매출 증대
- ▶ 울산지역 관급 물량에 대한 관내업체 계약이 약 74% 정도 체결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8	2019	2020	20201
울산전체 관급물량	1,819	3,223	2,958	2,482	1,854
울산지역 "ㄷ"석재	1,114	6	-	-	-
거창지역 관내업체	520	2,221	1,813	1,918	1,371
타 지역 석재업체	202	1,005	1,145	564	483

-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한 법인 인지도 증대 및 매출 증가
 - ▶ 2013년 석재 관련 5개 시험항목 인정
 - ▶ 2020년 골재 관련 8개 시험항목 인정

(단위 :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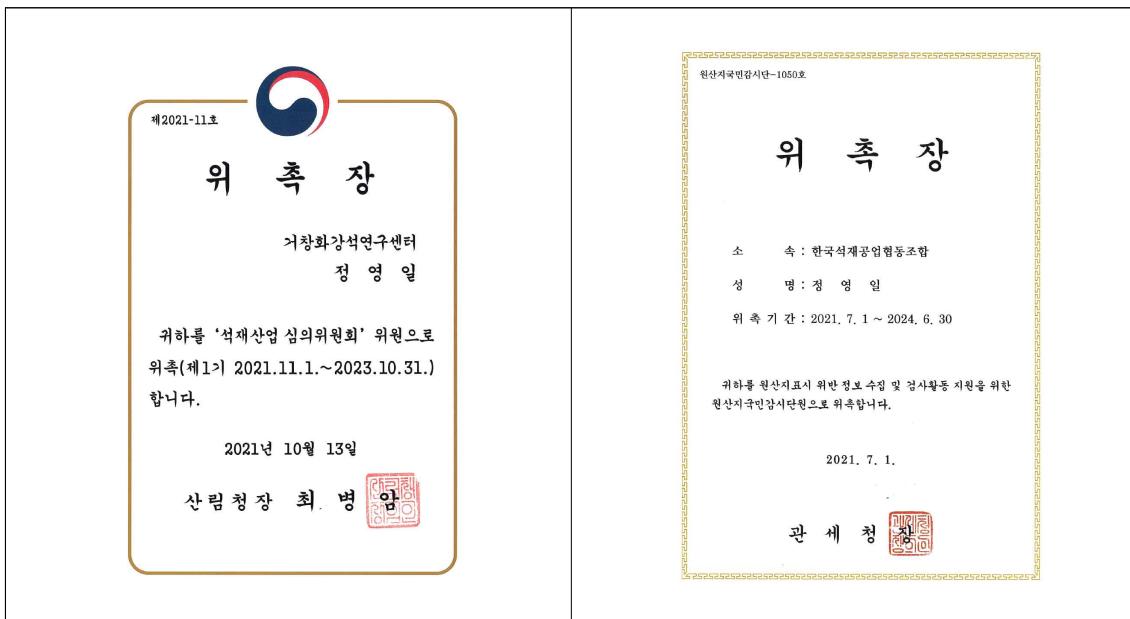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1.2	1	2.1	1.9	2.2
건수	322	328	359	605	584

○ 거창화강석 기술개발 및 상용화 실적

- ▶ 폐자재를 활용한 굴림보도판석 개발 : 202백만원
- ▶ 성곽석 제조 및 가공기술 개발 : 50백만원
- ▶ 조형물, 열주, 벤치, 앉음벽 등 제품 개발 : 95백만원
- ▶ 미끄럼 방지를 위한 무광택 판재 품질기준 마련
- ▶ 가공용 톱을 이용한 빗살무늬 판석 제조방법 및 제품 개발

○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연구센터 및 거창화강석 인지도 증대

- ▶ 석재산업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산림청) : 정영일 선임연구원
2021. 11. 1 ~ 2023. 10. 31 (2년)
- ▶ 원산지 국민감시단원 위촉(관세청) : 정영일 선임연구원
2021. 7. 1 ~ 2024. 6. 30 (3년)



○ 기업지원을 통한 제품화 실적

- ▶ 지원업체명 : 스톤 아이 앤 에스(거창 관내 기업)
- ▶ 지원내용 : 교통안전경계석 제품 디자인 및 개발, 품질분석 및 컨설팅, 중소벤처기업부 벤처나라 등록(2020. 12. 14) 지원, 홈페이지 제작 등
- ▶ 매출실적 : 포항시 외 13개소 총 51백만원(2022. 9월말 기준)

거창 한들교 회전교차로 설치전경	
주간	
야간	

□ 석분슬러지 처리 및 폐석 재활용 지원

○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지원

- ▶ 석재 가공시 발생되는 석분슬러지의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
- ▶ 석분슬러지 관련 각종 시험, 분석업무 등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해결
- ▶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 관내 업체 유해성 분석지원

○ 폐석 처리 및 재활용 지원

- ▶ 폐석을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등록 유도하여 새로운 재화가치 창출
- ▶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제품인 잡석으로 종목 추가 등록
(전 가공업체 등록 권장)
- ▶ 유상처리 되던 잡석의 판매 매출 발생 : 200,000원/대(25톤 덤프)

□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활용

연구개발 추진내용	실적 및 성과	기업체 공동개발 및 기술지원	연구센터 수익사업 기업체공동기술개발
석재품질 평가	석재원산지 검증/판별방법 국제공인시험 기관인정 단체표준 시험기관지정	석재원산지검증 조달청원산지검증 거창업체(50%할인) 시험분석지원 전국석재관련업체 시험분석 지원	원산지검증수수료 거창지역/전국 시험분석 수수료 가공조경석형상평가 기술개발용역수행 (특허1건등록/2건출원)
급경사지 안정성평가 기술개발	급경사지안정성 평가분석 사면안정성평가 시스템 구축	사면안정성평가/보강 (3개업체 지원) 석산인허가관련지원 석산 환경재해평가 및 사면분석 지원	거창 및 타 지역 사면안정성평가 드론을 이용한 사면 평가/지형변화 특허2건출원 준비중
석분슬러지 광물자원화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석분재활용 가능성 평가	폐기물유해성평가 업무지원(24개업체) 폐기물 투수/다짐 시험분석지원 폐기물관련법 개정(석산복구사용)	재활용관련기술 (세라믹기술연구원) 석분활용 방안 (도시건축과 연계, 특허 1건 출원)
문화관광 컨텐츠개발	디자인/실용화 제품 CNC 장비활용 개발	석재활용제품개발 (기업체 공동개발) CNC 장비 활용 가공제품제작지원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특허1건출원 준비중) 컬링스톤 상용화
석재표면 처리기술 개발	컬러석재 제조방법 석재표면 처리방법	컬러석재 시제품 샘플제작/납품 석재표면처리기술 (기업체공동개발)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특허 3건 출원) 한영대리석 사고석 모동석재 표면처리 (혼드, 브러쉬 등)

□ 석재산업 추진방향

- 석재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거창화강석 산업 중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산림청)을 기초로 하여 기본계획 수립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 기반조성-산업지원 및 육성의 단계별 추진

□ 주요 추진사업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 방향 검토
 - 사업목적 : 거창화강석 산업지원 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자료 확보
 - 사업내용 : 산업대분류상 거창화강석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경제 기여효과 정량적 분석 및 거창화강석 산업발전 방향 검토
- 조달전문검사기관 지정 추진
 - 사업목적 : 조달전문검사제도 시행에 따른 품질검사서비스 지원
 - 사업내용 :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조달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관급시장 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확대 기회 지원
- 거창화강석 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
 - 사업목적 : 거창화강석 산업진흥 도모를 위한 재정지원 확보
 - 사업내용 : 채석지구(골재 포함) 2개소, 가공 및 연구지구 1개소 지정 신청

□ 기대효과

- 지역에서 차지하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
- 원활한 원석공급으로 거창화강석 산업 활동의 연속성 보장
- 채석부터 가공까지 거창화강석 산업의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 완성
-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석재산업을 선도하는 거창군 위상 및 거창화강석 산업 중흥 기대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전화번호 : 055-943-3924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2. 9. 현원기준)	계 5명		정규직 5명	비정규직 0명
임원 ('22. 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의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최○○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이○○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조○○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정○○	거창석재조합(주) 대표	"
		김○○	거창석산협회장	"
		신○○	거창군청(미래전략과장)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22. 3. 21. ~ '25.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22. 3. 21. ~ '25. 3. 20.
	감사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22. 3. 21. ~ '25. 3. 20.
		강○○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변○○	변법식변호사사무소 대표	'22. 3. 21. ~ '25. 3. 20.
	고문	강○○	전 모동기업 대표	-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 · 출연액 (단위:백만원)	26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예산액 ²⁾	806	1,022	1,044
	지자체 지원액 ³⁾	180	180	26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 12. 31.기준	총수익 454		총비용 381	당기순이익 58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504 (자산 총액)		
부채		8 (부채 총액)		
자본 ¹⁾		497 (자본금 총액)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위 항목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

2022 - 99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2022.10.23.) 도래하여 당초 '22. 7. 26.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에 따라 신규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 '22. 8. 11. ~ 10. 5.까지 총 3차 모집공고 실시에도 신규수탁자 부재하고 기준수탁자 재협약 의사 표명('22. 10. 11.)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함
- 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명칭	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주요시설	비고
거창군립 노인요양 병원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	4,283㎡ (3,007㎡)	▶ 지하1층 : 기계실, 보일러실, 발전실 ▶ 1층 : 외래진료실, 물리치료실, 약제실, 행정실, 진단검사실 ▶ 2, 3층 : 간호사실, 입원병실 ▶ 4층 : 치매안심병동, 식당 등	126병상/ 직원59명/ 의료장비 및 물품 325종 2872개

나. 그간 운영 상황

- 수탁기관 :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 위탁기간 : 2017. 10. 23. ~ 2022. 10. 22.(5년간)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방법 변경

당 초	변 경
수탁자 신규 모집 공고	재위탁

라. 재위탁 내용

- 위탁사무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병원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위탁기간 : 2022. 11. ~ 2026. 10. 22.(4년정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에 의거 재위탁기간 20년을 넘을 수 없음
- 위탁방법 : 재위탁(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

3. 동의(승인)사항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 관련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 할 수 있음에 따라 재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

4. 향후 추진일정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 협의 : 2022년 10월

※ 위 · 수탁계약서 제19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조치] : 계약만료 된 경우 병원직원 및 환자 등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 민간위탁 관련 군의회 동의안(변경) 제출 : 2022년 10월

○ 민간위탁 관련 군의회 심의 결정: 2022년 10월

○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2년 11월

○ 위 · 수탁협약 체결 및 업무개시 : 2022년 11월

붙임 1.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계획(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추진 계획

민간위탁 중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경영능력과 전문성 등 재위탁 선정 평가를 통해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설치 · 운영)제1항

II 일반 현황

□ 위탁기관 현황

- 위탁기관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

병상수	대지 면적	연면적
126병상(27실)	4,283m ²	3,007m ²

- 보유장비 및 기구 : 325종 2,872개

□ 그간 위·수탁 추진현황

구분	기 간	운영 기관
1차	2006. 10. 23. ~ 2007. 10. 22.(1년)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2차	2007. 10. 23. ~ 2017. 10. 22.(10년)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3차	2017. 10. 23. ~ 2022. 10. 22.(5년)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방법 변경

당 초	변 경
수탁자 신규 모집 공고	재위탁

* 사유 : 수탁자 모집공고 '22. 8. 11. ~ 10. 5. 총 3차 실시 → 신규위탁자 부재

III

추진일정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 협의 : 2022년 10월

※ 위·수탁계약서 제19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조치] : 계약만료 된 경우 병원직원 및 환자 등 제반 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 민간위탁 관련 군의회 동의안(변경) 제출 : 2022년 10월

○ 민간위탁 관련 군의회 심의 결정: 2022년 10월

○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2년 11월

○ 위·수탁협약 체결 및 업무개시 : 2022년 11월

IV

세부추진 계획

□ 위탁기간 : 2022. 11.~ 2026. 10. 22.[4년정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에 의거 재위탁기간 20년을 넘을 수 없음

□ 위탁기관 :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 위탁방법 : 재위탁[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선정

- 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 지역사회 기여도 등

□ 위탁내용

○ 위탁사무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병원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위탁업무(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 수익금 : 병원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

□ 운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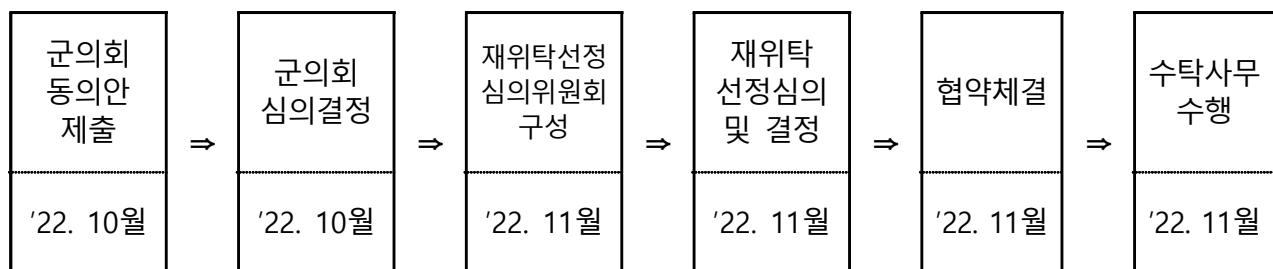
-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

※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재위탁기간은 4년으로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 부여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따름

□ 추진절차



□ 세부추진일정 및 내용

- 「거창군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구성시기 : 2022년 10월 중
- 구성인원 : 6명 이상 9명 이하
 - 당연직 : 부군수, 재무과장, 행복나눔과장, 보건소장
 - 위촉직 : 2~5명(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임 기 :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며, 심의 후 자동 해촉
- 주요기능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선정 심사

- 「거창군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년 11월 중
- 장 소 : 부군수실
- 참석대상 : 거창군 재위탁 선정심의위원
- 심의내용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을 위한 심사
- 제안설명 :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20분 이내 설명
- 운영방식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

- 재위탁 여부 공개 : 거창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 위·수탁 협약체결
 - 협약시기 : 2022. 11월
 - 협약기간 : 2022. 11. ~ 2026. 10. 22.(4년정도)
 - 협약내용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V 행정사항

- 민간위탁 관련 군의회 변경 동의안 제출 : 2022년 10월
- 민간위탁 관련 군의회 심의 결정: 2022년 10월
-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2년 11월
- 재위탁 협약 체결 및 업무 개시 : 2022년 11월 중

[붙임 2]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 보건소장 이정현

[붙임 3]

관 계 법 령(요약)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보건소)

제4조(설치·운영) ① 군수는 노인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갱신 할 수 있다.(개정 2005.10. 5)(2012.11.07.)

1. 의료법인(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
3.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10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3천만원 이하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0. 5)

-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군수 명의로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개정 2005.10. 5)(개정 2012.11.07.)
- ④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보건소)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5.10. 5)(개정 2008. 1. 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10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위탁기간이 2022. 12. 31. 만료됨에 따라 엘리트 운동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거창군 엘리트체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엘리트체육의 전문성을 갖춘 거창군체육회에 재협약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 나. 위 치 : 거창군 관내
- 다. 수탁기관 : 거창군체육회
- 라. 사업 비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안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317,500	317,500	317,500	330,000

마. 사업내용

- 대회참가비, 훈련비, 용품지원비, 코치 인건비 등
- 대상종목
 - 배드민턴 : 창남초등학교, 거창중학교, 거창승강기고등학교
 - 역 도 : 대성중학교, 거창대성일고등학교
 - 축 구 : 거창중앙고등학교
 - 지 도 자 : 배드민턴, 역도, 사격, 그 외 1~2종목 배치

* 지원 종목은 학교 운동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사. 재협약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3. 참고사항

가. 재협약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민간위탁 사무처리 평가 및 재위탁계획 수립 : 2022. 9. 13.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 2022. 9. 27.
 - 심의내용 : 민간위탁사무 재협약 적정성
 - 심의위원 : 6명(군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체육계, 공무원)
 - 심의결과 : 6명 전원 재협약 동의
- 민간위탁(재협약) 군의회 동의 : 2022. 10.
- 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2. 12.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다.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거창군체육회에서 위탁 운영중인 엘리트 운동부 육성사업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재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I 근 거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경비의 지원)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협약체결 등)

II 개 요

- 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안	비고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317,500	317,500	317,500	330,000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재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 3년간
- 수 탁 자 : 거창군체육회
- 위탁사무 : 대회 참가비, 훈련비, 용품비, 코치 인건비 등
 - 배드민턴 : 창남초등학교, 거창중학교, 거창승강기고등학교
 - 역 도 : 대성중학교, 거창대성일고등학교
 - 축 구 : 거창중앙고등학교
 - 지도자 배치 : 배드민턴, 역도, 사격, 그 외 1~2종목(육상 등)
- ※ 지원 종목은 학교 운동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수 및 코치현황

○ 배드민턴부

구 분	선 수 (명)	창남초				거창중				승강기고			
		소계	4년 미만	5년	6년	소계	1년	2년	3년	소계	1년	2년	3년
2020	25	12	7	1	4	5	3	0	2	8	2	3	3
2021	24	12	8	3	1	7	3	4	0	5	0	2	3
2022	25	13	9	2	2	7	1	2	4	5	1	3	1
창 단		창단 : 2001. 11. 코치 : 유성철(교육청) 감독 : 황대현(교사)	창단 : 2004. 4. 코치 : 정용진(교육청) 감독 : 서경달(교사)	창단 : 2011. 11. 코치 : 김주희(거창군) 감독 : 박호식(교사)									

○ 역도부

구 분	선 수 (명)	대성중				대성일고			
		소계	1년	2년	3년	소계	1년	2년	3년
2020	10	6	4	1	1	4	3	1	0
2021	14	8	3	4	1	6	2	3	1
2022	15	9	2	3	4	5	1	2	2
창 단		창단 : 2013.03.02 코치 : 이형섭(교육청) 감독 : 이귀태(교사)	창단 : 2017. 6월 교기지정 코치 : 이창준(거창군) 감독 : 김동후(교사)						

□ 연도별 대회참가 결과

○ 배드민턴부

구 분	창남초		거창중		승강기고	
	참가내역	참가 결과	참가내역	참가 결과	참가내역	참가 결과
2020	따전국여름철대회	2회전탈락	따전국봄철대회 따전국중고대회	3승3패 탈락 1회전탈락	따전국봄철대회	3승1패 탈락
2021	따전국봄철대회 따경남초중체육대회 따전국초등화장기대회	1승5패 탈락 단체전 금 단체전 동	따전국중고대회 따전국봄철대회 따전국가을철대회 따경남초중체육대회	1회전 탈락 1승5패 탈락 2승4패 탈락 단체전 금	따전국중고대회 따전국봄철대회 따경남도민체전	1회전탈락 1회전탈락 단체전 금
2022	따전국소년체전 따경남초중학생체육대회 따전국학교대항전	동2개(남,여) 금2개(남,여) 16강 진출	따전국종별대회 따높을고창배 전국종별대회 따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64강, 32강 16강 32강 64강 32강	따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 따높을고창배 전국종별대회	1회전탈락 1회전탈락

○ 역 도 부

구 분	대 성 중		대성일고	
	참가내역	참가결과	참가내역	참가결과
2020	따코로나로 시합 미출전		따춘계남자역도대회 따전국시도대항 역도대회 따전국남자역도대회 따전국주니어역도대회	금1개, 동2개 은3개 동2개 금3개, 동2개
2021	따전국문곡서상천배대회 따전국소년체전 따경남초중체육대회	은2개, 동1개 4위 금3개, 은9개, 동3개	따한국중고역도대회 따전국남자역도대회 따전국체전 따경남도민체전	금3개, 은2개, 동3개 은4개 금2개, 은1개 금12개, 은3개, 동3개
2022	따제70회 전국춘계 남자역도 따전국소년체전	금3개, 은1개, 동6개 금3개	따제70회 전국춘계남여역도대회 따제81회 문곡서상천배 따제94회 남자선수권대회 따제49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금3개, 은2개, 동3개 금4개, 은5개 은3개, 동3개 금1개, 은6개

□ 사업비 집행내역

○ 2020년

학교	집 행 내 역(단위:원)							
	합 계	인건비 및 파복비	기숙사비	대회지원비	훈련지원비	용품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창 남 초	22,485,000			2,359,000	4,486,000	15,640,000		
거 창 중	21,480,350			1,645,350	5,640,000	14,195,000		
거창공고	28,579,530		6,000,000	1,347,530	4,881,000	16,072,000	279,000	
대 성 중	13,315,900				7,925,000	5,390,900		
대성일고	13,361,000			2,935,000	5,980,000	4,000,000	446,000	
체 육 회	181,343,990	181,286,990						57,000
계	280,565,770	181,286,990	6,000,000	8,286,880	28,912,000	55,297,900	725,000	57,000

○ 2021년

학교	집 행 내 역(단위:원)							
	합 계	인건비 및 파복비	기숙사비	대회지원비	훈련지원비	용품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창 남 초	22,473,470			3,264,470	6,556,000	12,653,000		
거 창 중	21,469,050			6,243,050	6,751,000	8,475,000		
승강기고	27,454,940		5,700,000	3,097,600	4,768,340	13,492,000	367,000	
대 성 중	13,428,100			368,100	9,060,000	4,000,000		
대성일고	13,662,800			6,352,800	2,772,000	3,692,000	846,000	
체 육 회	181,981,860	181,607,860						374,000
계	280,440,220	181,607,860	5,700,000	19,326,020	29,907,340	42,312,000	1,213,000	374,000

※ 코로나19 상황으로 대회 및 훈련지원비 일부 미집행

□ 2022년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원)

수입				지출			
관	항	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위탁금	운영비	운영비	317,500,000	위탁금	인건비	소 계	188,500,000
						급여 (후생복지비 포함)	187,500,000
						피복비	1,000,000
					관리비	소 계	6,000,000
						출장여비	1,000,000
						대회참가 실비보상비	3,000,000
						업무추진비	2,000,000
					운영비	소계	123,000,000
						훈련용품비	50,000,000
						훈련지원비	39,000,000
						대회지원비	28,000,000
						기숙사비	6,000,000
계			317,500,000	계			317,500,000

* 인건비

- 급여 : 지도자 5명 × 37,500천원 / 피복비 - 지도자5명 × 200천원

- 지도자(코치) : 배드민턴 김주휘, 역도 이창준, 사격 정희택, 축구 최원민

* 관리비 : 엘리트운동부 운영경비(체육회 여비, 업무추진비, 코치 대회참가 실비보상비)

* 운영비 : 훈련용품비, 훈련지원비, 대회지원비, 기숙사비(500천원 × 12개월)

○ 학교별 집행계획

(단위:천원)

학교명	용품비	훈련비	대회비	합 계	비고
창남초	10,500	7,000	5,000	22,500	배드민턴
거창중	10,000	6,500	5,000	21,500	
승강기고	11,500	7,000	5,500	24,000	
대성중	4,000	6,500	3,000	13,500	역도
대성일고	4,000	7,000	3,500	14,500	
중앙고	10,000	5,000	6,000	21,000	축구
합 계	50,000	39,000	28,000	117,000	

IV

평가 및 재협약 추진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을 거창군에서 학교로 직접 집행하는 것은 법령 및 조례상 어려움이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
 - 관련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 거창군체육회에서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고 운영능력은 충분히 입증되었음
 - 연도별 주요성과(2019~2021)
 - 2019 : 전국대회 수상 / 금 2, 은 9, 동 4
 - 2020 : 전국대회 수상 / 금 3, 은 3, 동 4
 - 2021 : 전국대회 수상 / 금 5, 은 9, 동 2
 - 지원하는 일부 종목의 대회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어 초·중·고 코치 간담회 등을 개최해 성적 향상 방안을 주문하였으나, 엘리트 체육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가 담보된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지원 종목에 대해서는 선수들과 군민들의 선호 종목의 변화 등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함
 - 전문적이고 다양한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거창군체육회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의 발전을 위해 타당함
 - 거창군체육회 조직 및 인력 현황
 - 직원 : 12명(종사자 12)
 - 임원 : 44명(회장 1, 부회장 6, 이사 35, 감사 2)
 - 회원단체 : 50개(종목 33, 읍면 17)
- ⇒ 민간위탁심의위원(6명) 전원 거창군체육회 재협약 동의

□ 2023년

(단위:원)

수입				지출			
관	항	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위탁금	운영비	운영비	330,000,000	위탁금	인건비	소 계	188,500,000
						급여 (후생복지비 포함)	187,500,000
						피복비	1,000,000
					관리비	소 계	6,500,000
						출장여비	1,500,000
						대회참가 실비보상비	3,000,000
						업무추진비	2,000,000
					운영비	소계	135,000,000
						훈련용품비	50,000,000
						훈련지원비	38,000,000
						대회지원비	28,000,000
						기숙사비	18,000,000
계			330,000,000	계			330,000,000

V 향후 계획

- 2022. 10. :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군의회 동의
- 2022. 12. : 재협약 체결 및 공증

붙임 협약서(안) 1부.

『엘리트운동부 육성 사업』 민 간 위 탁 협 약 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집행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위탁자인 거창군수 “갑”과 수탁자인 거창군체육회장 “을”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민간위탁 목적) 본 위탁금은 엘리트운동부의 육성과 우수 선수 발굴 및 학교간의 연계, 학교의 자율적 관리를 통한 거창군 전략종목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금 교부액) 위탁금 교부액은 금330,000,000원(금삼억삼천만원)으로 한다. 단, 의회의 예산 승인에 따라 위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23. 1. 1. ~ 2025. 12. 31.까지로 한다. 단, 위 ·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전에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갑은 재협약 및 재계약 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엘리트운동부 육성 사업을 수탁하여 관리 · 운영함에 있어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한다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사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거창군 엘리트 운동부 육성과 관련된 제반 사항으로 한다.

제6조(관련법·조례 및 규정 준수 의무) “을”은 수탁 기간 중 「엘리트운동부 육성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및 결산 보고 등)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과정에서 “위탁자”가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 등 예산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결산보고서를 “위탁자”에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위탁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업무의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검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조사·검사 및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엘리트운동부 육성과 관련하여 지침 또는 훈령을 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022년 월 일

“갑” : 거 창 군 수

“을” : 거창군체육회장

관련 법령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 8조 (경비의 지원)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14.12.31)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10.)

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2.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3.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5.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
8. 전문체육 활동 지원
9.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③ 제2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항신설2015.12.10.)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 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 범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15. 2019.4.3.>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09.12.30>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전문개정 2009.12.30>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09.12.30>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07. 8. 1)(호 이동 2009.12.30.호삭제 및 이동 2019.4.3. >